

---

第12回서울特別市議會(定期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1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

日時 1994年11月25日(金) 午後2時

場所 內務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紛爭調整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案
  2. 서울特別市副市長資格基準에 관한條例案
-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紛爭調整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案(서울特別市長提出) ... 2面
  2. 서울特別市副市長資格基準에 관한條例案(서울特別市長提出) ... 2面
- 

(14時 04分 開議)

○委員長 朴禧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서울特別市議會 第12回 定期會 第1次 內務委員會 開議를 宣言합니다.

(議事棒 3打)

委員 여러분 그리고 內務局 關係公務員 여러분, 11月 22日 부터 11月 30日까지의 期間을 所管局 行政事務監査期間으로 설정하였으나 市長으로부터 94年 11月 21日 提出된 서울特別市紛爭調整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案과 서울特別市副市長資

格基準에 관한條例案이 11月 22日 우리 委員會에 각각 回附되어 이 두 案件에 대한 審査를 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審査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서울特別市紛爭調整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2. 서울特別市副市長資格基準에 관한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4時 05分)

○委員長 朴禧柱; 그러면 案件을 上程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紛爭調整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案과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副市長資格基準에 관한條例案을 一括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먼저 內務局長 나오셔서 上程된 두 案件에 대하여 各各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東勳; 먼저 바쁘신 日程에도 불구하고 오늘 行政事務監査가 끝났음에도 午後에 時間을 내 주셔서 저희 올렸던 두 가지 案件에 대해서 審議를 해 주시는 委員長님과 委員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議案番號 1185番 서울特別市紛爭調整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提案理由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地方自治 실시에 따라 廣域行政 遂行的 財政, 役割 分擔 등에 관한 自治區間의 紛爭을 합리적으로 調整함으로써 區間 均衡發展과 원활한 廣域行政을 도모하기 위하여 地方自治法 第140條의2, 그리고

同法施行令 第47條의10의規定에 의하여 서울特別市 紛爭調整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관한 事項을 정하고자 條例制定案을 提出하였습니다.

條例案의 主要骨子는, 1. 條例의 目的 및 委員會의 機能, 2. 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관한 事項 등입니다.

條例案을 자세히 說明드리면 서울特別市紛爭調整委員會의 機能은 自治區 相互間의 紛爭事項, 자치구의 구청장 상호간의 분쟁사항, 自治區間 行政協議會의 協議事項 등을 調整하는 데 있으며, 同委員會의 構成은 委員長은 副市長, 副委員長은 企劃管理室長이 되고 委員長 및 副委員長을 포함 15人 이내의 委員으로 構成하며, 任命 또는 委囑職 委員은 13人으로서 公務員 6人, 民間人 7名을 市長이 任命 또는 委囑하도록 하였습니다.

公務員 6人은 서울特別市所屬 局長級 이상 公務員과 特別行政機關 公務員, 즉 地方自治團體間 紛爭 發生 素地가 있는 業務와 관련된 特別行政機關 公務員 등으로 任命하고, 民間人 7人은 地方自治團體間 紛爭 發生 素地가 있는 分野에 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 중에서 委囑하게 됩니다.

其他 委員長의 職務, 幹事 指名, 意見聽取, 手當 支給 등 委員會의 運營에 관한 事項이 條例案에 規定되어 있으며, 其他 委員會 運營에 필요한 事項은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委員長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特別市紛爭調整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마치고, 이어서 議案番號 1186番 서울特別市 副市長資格基準에관한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資格基準에 관한 提案說明에 앞서 副市長職位에 대한 變遷

過程을 간략히 報告드리겠습니다.

우리 市 副市長 職位는 1949年 7月 4日 制定 公布되고 같은 해 8月 15日 施行된 地方自治法에 의거 서울特別市가 되면서 副市長 1人으로 出發하여 1962年 1月 27日 서울特別市 行政에 관한 特別措置法이 發效될 때까지 12年餘를 單一 副市長으로 運營해 오다가 이 特別措置法에 의거 一般行政業務와 技術業務로 나누어 第1.第2副市長으로 분리하여 약 20年間 2人의 副市長을 運營하였습니다.

그후 第5共和國 初期 政府의 機構縮小方針에 의거 1981年 11月 9日 다시 1.2副市長을 統合하여 13年間 1人의 副市長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음을 報告드립니다.

이와 같이 서울特別市로 職制가 확정된 이후 45年 中 12年間은 1人으로, 20年間은 1.2副市長으로, 다시 13年間은 1人의 副市長으로 運營해 오다가 1994年 3月 16日 改正된 地方自治法 第101條第2項 및 1994年 11月 21日 國務會議 通過된 同法施行令 第39條第2項에 의거 國家政務職이 아닌 1人의 地方政務職 副市長에 대한 任用資格基準을 條例로 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任用資格基準 設定은 立法 先例나 任用 先例에 의한 資格基準을 準用하거나 援用하는 것이 常例이나 次官級 地方政務職은 우리 市 副市長이 최초이고, 中央政府의 경우에도 外청기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各院, 部, 處의 國家政務職 資格基準이 法制화된 先例가 없어 예측되는 여러 懸案을 假定하고 任用過程에서의 問題點이 극소화 될 수 있도록 諸般 情況을 檢討한 끝에 첫째, 우리市가 地方自治團體 中 한 나라의 首都로서의 地位와 千百萬을 포용하고 있는 大都市인 점과, 둘째, 과거와 현재의 國家政務職 副市長 在任者의 經歷水

準을 考慮하였으며,

셋째, 政府傘下 외청기관의 國家政務職 次官級 資格基準을 일부 反映토록 하는 한편, 특별히 民選 市長의 任用權 行使에 障礙가 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任用 資格設定基準에 따라 풍부한 行政經驗 축적과 經綸者있는 者 任用을 위하여 一般職 최고 職級인 1級 이상 公職에서 3年 이상 在職한 者와 2級 이상으로써 6年 이상 勤務한 經歷者를 條例案 第2條1號와 2號에 規定하였고, 任用權者인 市長으로 하여금 優秀 人材를 광범위하게 選定할 수 있는 任用幅을 넓혀드리기 위하여 地方行政分野에 學識과 經綸이 있는 者를 迎入할 수 있도록 3號를 별도 規定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特別市副市長資格基準에 관한 條例案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禧柱;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提案說明된 案件에 대하여 各各 檢討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文孝; 專門委員 鄭文孝입니다.

먼저 서울特別市紛爭調整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  
(報告)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  
(뒤에 실음)

.....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第2案 서울 特別市副市長資格基準에 관한 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

(報告)

서울특별시부시장자격기준에 관한조례안검토보고  
(뒤에 실음)

.....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禧柱;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一括 上程된 두 案件에 대한 委員님들의 質疑와 執行部側의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特別市紛爭調整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案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質疑하십시오.

權寧斌 委員, 質疑하십시오.

○權寧斌 委員; 지금 이 委員會 名稱을 紛爭調整委員會라고 했는데 여기 委員會 機能에 보면 自治區 相互間, 뭐 區廳 相互間 紛爭事項하고 自治區 行政協議會의 協議事項 調整도 나와 있거든요.

○內務局長 金東勳; 네.

○權寧斌 委員; 그래서 저는 이 紛爭이라는 말이 名稱이 들어간다는 것도 조금 그렇고 그래서 제 個人 생각으로는 서울特別市自治區仲裁委員會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自治區에서 紛爭도 다루지만 또 뭐 協議會 協議事項도, 이런 意見이 들고요. 고칠 수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上位法에 明示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 第3條第3項2에 보면 地方自治團體間 紛爭發生 素地

가 있는 分野에 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 中에서 7人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地方自治團體間 紛爭 發生이 현재까지 그렇게, 自治화된 지 얼마되지도 않고, 우리 事例가 별로 없었지 않느냐?

차라리 包括概念으로 地方行政分野에 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 中에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意見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때요, 內務局長계선?

○委員長 朴禧柱; 內務局長, 答辯해 주십시오.

(「質疑 더 받고 答辯…….」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朴禧柱; 그래요?

(「네」 하는 委員 있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質問할 委員 또 누가 있습니까?

質疑할 분 또 있어요?

○權寧斌 委員; 副市長條例案에 대해서 말씀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禧柱; 그것은 뒤에…….

○權寧斌 委員; 끝나고요?

○委員長 朴禧柱; 네.

다음 우리 韓仁洙 委員, 質問하십시오.

○韓仁洙 委員; 韓仁洙입니다.

물론 저도 權寧斌委員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사실 民間人 7人은 地方自治團體間 紛爭 發生 素地가 있는 分野에 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 中에서 委囑하게 한다, 이러한 內容 中에서 사실 地域의 紛爭이라는 것은 어떤 特定人보다는 그래도 地域의 실태를 잘 알고 그 地

域에서 좀 오래 居住한 사람을 같이 포괄적으로 經驗이 풍부한 者 中에서, 약 뭐 住民登錄上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地域에서 한 5年 이상 정도는 居住한 사람들 中에서 좀 어떻게 選拔이 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나는 그렇게 個人的인 意見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委員長 朴禧柱; 우리 金鍾雄 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金鍾雄 委員; 지금 이 委員會가 常設機構로 되는 것인지 한 시적으로 特別委員會格으로 어떤 問題가 있었을 때만 그때 그때 構成되어서 하는 것인지 바로 한 번 대답해 주세요.

○內務局長 金東勳; 後者입니다.

○金鍾雄 委員; 後者이지요?

○內務局長 金東勳; 네, 委囑을 해 놓고 運營은 年中 運營하는 것은 아니고 紛爭이 있을 때만 召集해서 運營합니다.

○金鍾雄 委員; 지금 그것이 저는 좀 不當하다고 보는 것이 紛爭이라는 것이 어떤 地域的인 問題에서 法的인 問題 등등의 여러 事項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水道도 있을 수 있는가 하면 뭐 쓰레기燒却場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이외에 行政的인 면에 있어서, 심지어는 뭐 警察搜查權까지도 다음에 우리 서울市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問題까지 있는데 여기를 미리 廣範圍하게 위원을 뽑아 놓는다는 그 자체도 좀 問題가 있는 것 아니냐, 그때그때 狀況에 따라서 거기에 專門性을 가진 사람들이 都市 建築이면 都市 建築의 問題라든지.....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게 常說로써 委員을 選拔해 두고, 機構를 두고 무슨 問題든 거기에서 다한다는 것은 좀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여기에 따른, 委員會에 따른 細部 會議規則을 또 만듭니까? 이 條例로써 끝나는 것입니까, 이 밑에 여기 委員會에 관

한.....

○內務局長 金東勳; 委員會 運營規則은 만들 수도 있고요, 안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金鍾雄 委員; 지금 현재 執行部の 案은 어떻습니까?

○內務局長 金東勳; 현재는 아직 거기까지는 構想 안 했습니다.

○金鍾雄 委員;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데 이것은 뭐 機構 자체는 構成되어 있는데 委員을 미리 選定해 둔다는 것이 나는 좀 그거 하다, 그때 그때 事案에 따라서 委囑을 해서 그 問題를 解決하는 特別委員會格 性格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朴禧柱; 우리 白中元 委員, 質疑하십시오.

○白中元 委員; 서울特別市紛爭調整委員會 委員會構成을 보면 전체 15人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副市長, 企劃管理室長을 포함해서 公職者가 8名, 民間人이 7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地方自治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內務局長 金東勳; 아닙니다. 委員 數는.....

○白中元 委員; 특별히 公務員 數를 1名을 더 많게 한 理由는, 特別한 事由라도 있는지?

○內務局長 金東勳;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白中元 委員; 그런데 지금 各種 調整委員會, 무슨 審議委員會를 보면 公務員 數가 1.2名 많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 常例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民間人을 參與시키는 것은 하나의 名分上 參與시키고, 거기에 모든 審議 또는 이런 調整 이러한 뜻은 執行部の 의도대로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意圖的인 그런 構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質問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特別한 理由

라도 있는지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禧柱; 또 質疑할 분?

金鍾雄委員, 質問해 주십시오.

○金鍾雄 委員; 우리가 委員會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일반 大多數의 市議員 전체가 委員會에 대한 콤플렉스에 젖어 있을 정도입니다. 委員會가 우선이나, 市議會가 우선이나 하는 位相問題 가지고서도 지금 많은 論難을 하고 있습니다. 一例로 都市計劃審議委員會인가 거기에는 서울市議會에서 決議된 事項도 거기에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議決 자체가 效力이 없는 것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調整委員會의 問題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市議會가 可決한 事項도 紛爭의 對象이 된다고 봤을 때 이 委員會가 결정한 事項이 市議會 議決보다도 더 위라고 보는 그런 성격이나 아니면 아니냐 이것도 한 번 좀 밝혀 주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禧柱; 또 質疑 없지요?

權寧斌 委員!

○權寧斌 委員; 지금 이 條例를 보면 서울市長의 指示나 어떤 그 方針이 方針대로 決定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白中元委員 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問題하고요. 또 그런 것들이 文民時代라고 하면서 좀 우리 時代에 적합한 그런 것인가, 지금 自治區 議會도 있는데 區議會도 있고 이제 市議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問題는 오히려 市議會에서 이렇게 調整할 수 있는 그런 機能도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그런 것을 活用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여기 民間人 7名 中에, 그 紛爭의 內容이 항상 일정하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때 그때 여러 가지 아마 事案이 대두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利害當事者, 紛爭當

事者が 出席을 해서 여기 뭐 意見聽取도 있습니다만 자기들 所見을 충분히 發表할 수 있는 그런 對話의 場도 이 委員會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여기 副市長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바로 이어서 政務職副市長, 地方職副市長을 합니다. 그러면 副市長 두 사람이 事案에 따라서 委員長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政務職이 일괄해서 맡는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明記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朴禧柱; 內務局長은 우리 委員님들의 여러 가지 案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 있어요, 물어보고 해야지」 ..... 하는 委員 있음)

○沈相一 委員; 沈相一 委員입니다.

서울市長 傘下에 諸 委員會가 지금 몇 個가 움직이고 있는지 그 數値를 좀 말씀해 주시고.....

○內務局長 金東勳; 네?

○沈相一 委員; 숫자, 숫자요. 市長傘下에 지금 여러 委員會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分布圖도 좀 봐야 되겠고, 이 委員會 자체가 市長 諮問機構 아닙니까?

○內務局長 金東勳; 議決機關으로 되어 있습니다.

○沈相一 委員; 議決요?

○內務局長 金東勳; 네, 議決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沈相一 委員; 委員會에서 뭐 議決을 하든 무슨 事案을 내왔을 때에 이 問題는 市長諮問機構아니에요? 議決機構라고 하면 그러면 委員會에서 決議한 것을 市長도 承服합니까?

○內務局長 金東勳; 아니 이것은 지금 서울市와 自治團體間의 問題가 아니라, 그 서울市와 自治團體間의 問題는 별도로 우

리가 그것을 協議하는 機構를 두기 위해서 市.區行政協議會라는 것을 地方自治法에 根據條項을 新設해 주도록, 현재 그것이 없습니다, 地方自治法에 根據條項이 없어서 우리가 그것을 상당한 問題點으로 인식하고, 地方自治法을 改正해 달라고 지금 政府에 建議해 왔습니다. 여기 이 事項은 自治團體間的 紛爭事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市長이 仲裁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紛爭事項을 調整해 주기 위해서 이런 委員會를 構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市長의 뜻과 다르게 움직일 그런 問題는 여기 없습니다, 自治團體間的 問題이기 때문에.

○沈相一 委員; 最終 決定者는 市長 아닙니까?

○內務局長 金東勳; 아닙니다. 이것은.....

○沈相一 委員; 아니 아니야, 自治區間 紛爭委員會에서 紛爭이 일어났을 때 이 紛爭調整委員會에서 會議를 열어 가지고 處理한다든지, 仲裁役割을 한다든지 무슨 案件이 나올 것 아니에요.

○內務局長 金東勳; 네.

○沈相一 委員; 그러면 市長한테 建議드려서 市長이 決定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決定權 누가 있어요?

○內務局長 金東勳;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決定하는 겁니다.

○沈相一 委員; 여기서 다 決定해요?

○內務局長 金東勳; 네.

○沈相一 委員; 그러면 이 事案에 대해서는 執行部에서 다 承服하는 거예요?

○內務局長 金東勳; 그래야죠.

○沈相一 委員; 그래요?

○內務局長 金東勳; 네.

○沈相一 委員;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쭙 봅시다. 이것 紛爭

調整, 自治區 紛爭하고는 다른데 지금 諸 委員會가 있어요. 上水道 보면 뭐 맑은물供給對策委員會 그래서 거기에도 보니까 委員長이 市の 幹部이고 또 그것 뿐만 아니라 여러 機構를 통해서 委員會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 숫자가 대략 얼마 됩니까?

○內務局長 金東勳; 지금..... 이 監查資料 內務局事項 13페이지를 보면 委員會 運營事項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10個입니다.

○委員長 朴禧柱; 그러면 그게.....

○沈相一 委員; 가만 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內務局長 金東勳; 현재 委員會 事項은 調査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沈相一 委員; 그러니까 內務局 傘下에 지금 10個가 있다.

○內務局長 金東勳; 네.

○沈相一 委員; 이게 通過되면 11個 되겠네요?

○內務局長 金東勳; 네.

○沈相一 委員; 그런데 委員會別로 業務는 물론 各各 있겠지만 機能이 各各 다를 것이고, 또 이 內容에 보면 어느 機構는, 여기 몇 가지 보면 이것은 市長 諮問機構도 있어요, 委員會가.

○內務局長 金東勳; 물론입니다, 그런 委員會도 있습니다.

○沈相一 委員; 이 自治區 紛爭關係 때문에 그렇고.....

○內務局長 金東勳; 네.

○沈相一 委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禧柱; 또 다른 委員 質問 없으십니까?

權寧斌委員, 質問하십시오.

○權寧斌 委員; 그리고 지금 討議 中에 잠깐 着眼이 돼서 그

러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仲裁을 했다, 調整이 됐는데, 결론이 났는데 自治區에서 그것을 안 받아들인다 그랬을 경우에 대한 어떤 強制 事項이라든가, 어떤 處罰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內務局長 金東勳; 네.

○權寧斌 委員; 이것은 그냥 決定, 仲裁을 했어요. 했는데 안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內務局長 金東勳; 法에 보면 이 仲裁決定, 議決한 事項에 대해서 書面으로 通報하도록 되어 있고, 通報를 받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그 調整決定事項을 履行해야 한다.

○權寧斌 委員; 있어요, 법에? 上位法에?

○內務局長 金東勳; 네.

○委員長 朴禧柱; 다음 白中元委員, 質疑하십시오.

○白中元 委員; 委員會 構成에 있어서 民間人 7人中에 地方自治團體間的 利害關係가 되는 사람이 포함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任期가 1年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어떤 補完策은 있습니까?

民間人 7人 中에서 自治區間 어떤 紛爭에 관련되는 그 該當 地域에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때는 어떤 補完對策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

○內務局長 金東勳; 그것은 현재 그런 補完對策은 지금 條例案에는 없는데요, 뭐 그런 경우에는 여기 이제 맨 마지막, 條例案 마지막을 보면 이 條例에 規定된 事項 外에 委員會 運營 등에 관하여 其他 필요한 事項은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委員長이 정한다, 運營細則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當該 審議委에서는 除斥을 하도록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運營細則을 정해서 運營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白中元 委員; 네, 그런 補完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禧柱; 韓仁洙 委員, 質問해 주십시오.

○韓仁洙 委員; 이 紛爭調整委員會의 機能은 어떤 議決事項이 있을 때 그 議決事項이 議會를 거쳐서 紛爭調整委員會으로 보내지는 겁니까, 紛爭調整委員會에서 議決된 事項을 다시 議會에서 議決하고자 하는 事項입니까? 그러니까 그 關係가 일단 議會에서도 여러 가지 自治區의 紛爭事項을 討議하고 審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지난번에 방금 通過된 그 우리 境界調整 같은 것. 그런 事案을 볼 때도 보면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어서 紛爭調整委員會가 構成이 된다면 그 構成委員會가 議會 議決을 먼저 하고 난 후에 하는 것인지, 先後를 좀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內務局長 金東勳; 네, 이 問題는 제가 먼저 答辯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도 많이들 質問하셔서.....

○委員長 朴禧柱; 그렇게 하세요.

○內務局長 金東勳; 제가 이게 나중에 質問하신 部分에 대해서 충분한 答辯이 안 될 것 같아서 우선 韓仁洙 委員님 質問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禧柱; 네, 그러세요.

○內務局長 金東勳; 여기 紛爭事項과 自治區議會의 議決事項, 이것은 전혀 별개의 問題로 지금 해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自治區에서 하는 모든 業務가 區議會의 議決을 先行條件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議會의 議決을 받아야만 執行이 되는 事業에 대해서는 당연히 議會의 議決을 받아야 될 것이고, 議會의 議決

을 받지 않아도 執行되는 事項 그런 業務에 대해서도 紛爭의 素地가 있습니다. 그런 事項은 紛爭을 調整해서 끝나는 것이고, 紛爭을 調整했다라도 그것을 通報받은 自治團體의 長이 議會의 議決을 거쳐야만 그 業務가 執行이 되는 事項에 대해서는 議會의 議決을 별도로 또 받아야 됩니다.

또 반면에 2個의 區가 실질적으로 어떤 業務를 가지고 마찰이 일어났는데 그 業務가 各各 議會의 議決을 거쳐야 될 業務입니다. 그러면 A區에서도 議會의 議決을 거쳤고 B區에서도 議會의 議決을 거쳤지만 兩區가 서로 紛爭狀態에 있기 때문에 그 議決을 거친 業務가 推進이 안 될 때는 바로 申請에 의해서, 兩區의 申請에 의해서 바로 紛爭調整委員會에서 審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韓仁洙 委員; 그런 경우에는 그럼 市議會에서 調整을 해주면 안 되는 겁니까, 區議會에서 그러한 調整이 어려울 때는?

○內務局長 金東勳; 市議會에서 調整이 되면 더 좋지요.

○韓仁洙 委員; 아니 글썄 그러니까요.

○內務局長 金東勳; 구태여 이 紛爭調整委員會에서 調整하지 않고 더 간단한 方法으로 調整이 되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 말이죠, 안 될 때를 상정해서 紛爭調整委員會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自治區의 紛爭事項이 市議會에서 간단히 調整해서 끝내 주면 구태여 紛爭調整委員會까지 올라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紛爭調整委員會에는 우리가 억지로 갖다가 이것을 調整하는 것이 아니라 該當 自治區에서 申請이 있을 때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 저 앞에 말씀드린 部分에 대해서.....

○沈相一 委員; 아니 아니, 韓仁洙 委員님의 質問과 관련된

것인데 이 紛爭調整委員會가 民間人 7名으로 되어 있지요?

○內務局長 金東勳; 네.

○沈相一 委員; 7名을 推薦을 할 때 이 推薦權이 누구한테 있는지 이것 좀 묻고 싶고요.

그 중에서 市議員도 여기에 參與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紛爭이 올라 왔을 때 決定을, 解決했고 事案마다 이 紛爭委員을 수시 변동할 수 있는지, 任期는 얼마까지인지, 그 細部事項을 좀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朴禧柱;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條例에.....

○沈相一 委員; 條例 내가 읽을 줄..... 눈이 어둡기 때문에 여쭙 보는데 왜 자꾸 그래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內務局長 金東勳; 民間人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市議員이라고 그래서 권이 除斥하는 規定은 없습니다. 다만 市議員인 경우에 그런 自治區間의 紛爭問題에 끼어 들어가서 뭐 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어렵지」 하는 委員 있음)

그러나 市議員도 필요하다면 委囑할 수가 있습니다.

○委員長 朴禧柱; 內務局長은 아까 質問한 데 대해서 答辯해 주십시오.

○內務局長 金東勳; 權寧斌委員님께서 말씀하신 仲裁調整委員會의 名稱은 地方自治法과 施行令에 名稱이 明示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名稱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民間委員 中에서 地方自治團體間 紛爭 發生 素地가 있는 分野에 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 中에서 7人, 이것을 地方行政 分野에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 이렇게 포괄적인 概念으로 해도 이것은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

는 이제 이러한 規定에 의해서 실제로 어떤 사람을 委囑하느냐하는, 委囑 당시에 신중을 기해서 委囑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봅니다만 다만 이 文句는 內務部 準則案에 표시되어 있는 文句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內務部에서 이렇게 이런 文句를 표현한 理由는 이 紛爭의 調整이 굉장히 민감한 事項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紛爭이 發生될 수 있는 素地의 業務, 대략 이제 우리가 볼 때 嫌惡施設 設置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業務에 상당히 깊이 있는 學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넣기 위해서 이러한 세밀한 文句를 쓰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韓仁洙 委員님께서 적어도 그 地域의 사정에 精通한 사람, 그래서 이것을 한 5年 이상 거주한 者로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이 委員會의 總人員數가 15人 이내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 地域概念에서는 조금 이것은 여기에 民間委員 委囑時에 이 地域概念을 反映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金鍾雄委員님께서 미리 委員들을 委囑할 것이 아니라 그時 그時 대두되는 紛爭, 調整要求하는 紛爭業務에 적합한 사람을 그時 그時 委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물론 그것도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意見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時 그時 委員을 委囑해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 委員을 委囑해 놓고 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다만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가장 그 紛爭을 적정하게 調整할 필요로 인해서 그時 그時 委囑하는 것이 더 그 業務에 精通한 사람을 委囑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뜻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民間委員을 委囑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적어도 상당한 權威가 있는 사람을 委囑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立法 기술상 그 運營細則 같은 것을 그 時 그 時 精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보면 그런 部分을 조금 加味할 수도 있고요.

뒤에 第6條를 보면 委員長은 委員會 審議事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係公務員 또는 關係專門家を 出席시켜 意見을 듣거나,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時 그 時 그 紛爭事項을 調整하기 위해서 필요한 專門家は 關係專門家로서 우리가 要請을 해서 委員會에서 충분히 意見을 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補完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白中元 委員님께서 公務員 數를 1名 많게 한 理由는 무엇이나, 이것은 특별한 理由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公務員 數를 하나 줄이고 民間人 數를 하나 늘여서 均衡을 반대로 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金鍾雄委員님께서 委員會가 우선인가, 市議會가 우선인가 하는 말씀은 都市計劃委員會의 경우에 市議會의 意見聽取가 된 것을, 意見聽取해 可決이 된 것이 都市計劃委員會에서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각각의 單行法에서 그것이 意見聽取로 되기 때문에 그런 問題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 번 分區關係 때도 유사한 事例가 나왔습니다만 地方自治法에서 關係 地方議會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意見聽取이기 때문에 그 意見과 다른 결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委員會가 우선인가, 市議會가 우선인가 하는 것은 서로 우선 關係는 없습니다. 아까 韓仁洙 委員님의 質問에 答辯해 드린 바와 같이 紛爭이 더 간

단한 方法으로 上級 自治團體議會에서 調整이 되면 더욱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우선 關係는 成立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權寧斌委員님께서 紛爭當事者が 出席할 수 있느냐, 물론입니다. 第6條에 關係機關 또는 團體에 대하여 資料 및 意見提出등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또 關係公務員을 出席시켜 意見を 들을 수 있다 했기 때문에 紛爭當事者를 紛爭調整委員會에 出席시켜서 意見도 들을 수가 있고 또 資料提出을 要求할 수가 있습니다.

○李永和 委員; 紛爭當事者が 委員이 되었을 경우에.....

○內務局長 金東勳;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運營細則에서 日時 日時 運營 등에 관하여 其他 필요한 事項은 委員會 議決을 거쳐 委員長이 정한다 했기 때문에 委員會에서 그 審議事項에 한해서는 審議委員에서 除斥해 버리면 됩니다.

○李永和 委員; 任期中이라도 除斥해야지요?

○內務局長 金東勳; 네?

○李永和 委員; 任期中이니까.....

○內務局長 金東勳; 任期中이 아니고 會議運營 中에 말이지요.

○李永和 委員; 運營 中에..... 됐어요.

○內務局長 金東勳; 그 다음에 副市長이 이제 앞으로 2名이 될 텐데 누가 委員長이 될 것인가 하는 問題는 저희들이 이것은 사실 條例案을 만들고 나서 副市長制가 올라 왔기 때문에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시다만 제 생각에는 지금 第1副市長이 內務局의 業務를 管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 紛爭調整委員會의 幹事는 行政課長이 되도록 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이 業務는 內務局 行政課에서 擔當해야 될 業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第1副市長이 調整委員會委員長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權寧斌 委員; 그러면 아예 明記하는 것이 좋잖아요?

○內務局長 金東勳; 네.

○權寧斌 委員; 그리고요, 6番 意見聽取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실 적에 뭐 利害當事者나 團體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文句에는 關係機關 또는 團體에 대하여 資料 및 意見 提出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에는 關係公務員 또는 關係專門家, 利害當事者나 團體를 出席시켜 意見を 듣거나,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利害當事者들의 意見開陳의 기회는 당연히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內務局長 金東勳; 네.

○權寧斌 委員; 그런데 그 뒤 文句는 意見 提出, 關係資料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직접 나와서 意見を 듣는 이런 그 利害當事者 文句를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內務局長 金東勳; 그 앞에 말이지요. 關係公務員 또는 關係專門家を 出席시켜 意見を 듣거나 이 條文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까?

○權寧斌 委員; 그것 가지고는 不足하지요. 利害當事者가 들어 가야지요. 關係專門家라는 것은 그 分野에 프로페셔널한 知識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 利害當事者라고 볼 수 없거든요. 區分이 됩니다.

利害當事者가 될 수가 있고 利害當事團體도 될 수 있는 것이니까.....

○內務局長 金東勳; 關係公務員.

- 權寧斌 委員; 關係公務員요?
- 內務局長 金東勳; 네.
- 權寧斌 委員; 公務員하고는 다르지요.
- 內務局長 金東勳; 利害當事者が 公務員이지요. 이것은 自治團體間 紛爭調整業務이니까요.
- 權寧斌 委員; 自治團體間?
- 內務局長 金東勳; 네, 이게 뭐 市民間의 紛爭調整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 權寧斌 委員; 關係公務員이라는 것은 擔當公務員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 內務局長 金東勳; 아닙니다.
- 權寧斌 委員; 住民間에 마찰이 일어나서, 사실 지금 이렇거든요. 自治團體라는 것은 一例를 들어서 九老區에서 問題가 생겼다 그러면 九老區公務員이 九老區 住民들 利益을 代辯할 수 없어요. 그러면 또 陽川區다 그럼 陽川區도 그럴 것이고, 충분히 公務員들이 民間人들의 그런 意見을 代辯할 수 있을까요?
- 內務局長 金東勳; 이 紛爭調整委員會, 여기 아까 말씀이 利害當事者 이렇게 하면 紛爭調整委員會에 利害當事者인 住民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燒却場을 어디다 建設하려고 그러는데 한쪽 區에서는 거기다 設置하는 것을 贊成하고 한쪽 區에선 反對한다 했을 때 그 利害當事者 하면 住民이 들어가는데 住民을 거기다 데려다 놓고선 鄙視현상에 의한 그러한 問題는 도저히 解決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겪어 온 事項입니다.
- 權寧斌 委員; 쓰레기燒却場을 왜 하필 예를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쓰레기燒却場은 그 自治區 자체적으로 建設하는 것이

니까 紛爭調整委員會에 올라올 리도 없고 區 자체에서 解決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 하는 委員 있음)

아니 이제 그런데 지금 1個 區에 1個 燒却場을 推進하고 있는 것이니까, 一例를 들면 이것 말고도 뭐 兩區에 걸쳐서 어떤 場所가 提供이 된다는가 아니면 또 어떤 영향을 미친다거나 뭐 이런 것이 되겠지요.

利害當事者を 넣는 것이 어때요?

○內務局長 金東勳; 利害當事者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權寧斌 委員; 그래요?

○內務局長 金東勳; 네.

兩個 또는 兩個 이상의 自治團體의 紛爭事項을 調整하는 事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權寧斌 委員; 表決權은 없더라도 發言할 수 있는 權利는 보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內務局長 金東勳; 예를 들어서 自治團體가 紛爭調整을 申請한 自治團體의 關係公務員을 우리가 出席시킬 수가 있으니깐 그 關係公務員을 통해서 그런 住民들의 어떤 要求事項 같은 것은 충분히 意見을 開陳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白中元 委員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제가 利害關係者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說明을 드렸고요.

이상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李永和 委員; 아니 가만 있어봐, 아까 제가 얘기한 除斥 忌避에 대한 別途條文을, 이것이 常設機構 아니에요, 常設機構?

○內務局長 金東勳; 네.

○李永和 委員; 그런데 除斥 忌避에 대한 條文을 별도로 하나 안 넣어도 되겠어요?

○內務局長 金東勳; 네, 그것은 안 넣어도 됩니다. 그것은.....

○李永和 委員; 常設해 놓은 것인데..... 委員身分狀態에서.....

○內務局長 金東勳; 利害關係의 當事者가, 자기가 관련된 紛爭事項을 자기가 審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은 어떤 委員會든지 그 사람은 그 審議할 때는 除斥을 시키기 때문에 委員長이.....

○李永和 委員; 대개 그 條文이 들어가 있어서 制裁를 가하는 것이지 條文도 없이.....

○內務局長 金東勳; 뭐 없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만 확실하게 넣으실 필요가 있으면 또 넣어도 좋습니다.

○李永和 委員; 그게 중요해요. 전 딴 것은 뭐..... 그게 하나 중요하다고요.

○內務局長 金東勳; 다만 여기서 저희가 이 條文을 즉 보고서 여러 가지 問題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다만, 內務部 準則案과 다르게 우리가 追加로 넣은 것이 있습니다. 第2條 機能에 內務部 準則에는 1號, 2號 自治區 相互間 紛爭事項과 自治區 區廳長 相互間 紛爭事項 이렇게만 들어가 있는데 지금 自治區行政協議會의 協議事項 調整 이것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왜 이것을 넣었느냐 하면, 地方自治法 第142條에 의해서 自治區間行政協議會가 構成되어 있을 경우에 自治區行政協議會에서도 調整이 어려운 事項이 發生할 경우에는 이것은 뭐 도리 없이 이 紛爭調整委員會에 上程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해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 追加로 넣었고요.

公務員인 委員의 任期에 대해서는 言及이 없었습니다, 內務部 準則案에 있어서는. 그래서 當該職에 在職하는 동안으로 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內務部 準則案에서는 幹事が 企劃課長으로 되어 있는 것을 行政課長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점을 參考로 報告드립니다.

○委員長 朴禧柱; 內務局長은 말이지요.....

○金鍾雄 委員; 委員長님, 이것 조금 전에 李永和 委員님께서도 얘기하셨고 우리 委員들이 죽 한 內容들이 포함 좀 시켜야 될 事項들은 運營細則을 정할 때 內務局長님께서 필히 그것을 좀 삽입시켜서 運營細則을 만들어 주면 모든 問題가 解決될 것 같은데.....

○內務局長 金東勳; 運營細則은 현재 우리는 만들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李永和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部分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李永和 委員; 난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問題에 부딪쳤을 적에 그것은 問題가 된거고요, 앞으로.

○內務局長 金東勳; 네, 그것은 넣도록..... 넣어도 무방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禧柱; 內務局長은 權寧斌 委員이나 金鍾雄 委員, 白中元 委員, 沈相一 委員, 韓仁洙 委員, 李永和 委員 여러분의 意見이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意見調整을 위해서 잠시 이것은 保留를 하고 第2案 副市長資格基準에 대해서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寧斌 委員; 副市長의 資格이 1, 2, 3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資格이?

○內務局長 金東勳; 그렇습니다.

○權寧斌 委員; 그래서 제가 問題를 提起하고 싶은 것은 一例를 들어서 2級 이상의 公務員職에 6年 이상 在職한 자가 副市長이 되었다 假定을 했을 경우에 서울시에는 1級 公務員이 여러 職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級數가 낮은 사람은 副市長이 됐을 경우에 어떤 體系上 問題는 없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答辯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地方職과 政務職의 그 概念 차이 또는 어떤 禮遇나 이런 것에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뭐 政務職이 首席 副市長이고, 第1副市長이고 무슨 地方職이 第2副市長인지 그런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좀 해 주세요.

○委員長 朴禧柱; 一問一答式으로 質問하고 答辯해 주십시오.

○內務局長 金東勳; 네, 2級 이상 公務員의 職位에 있던 사람이 副市長이 됐다 그럴 때 어떤 問題가 發生하지 않겠는가, 個人的인 問題는 있을 수가 있는 事項이겠지요. 그러나 制度上으론 전혀 問題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현재도 그렇게 많이 運營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地方政務職과 國家政務職間의 給與上, 待遇上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國家政務職이 第1副市長, 地方政務職이 第2副市長으로 되도록 서울特別市와 그 所屬機關 職制가 같이 이번에 改正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國家職 政務職副市長은 企劃管理, 監査, 內務, 財務, 保社關係, 家庭福祉, 文化觀光, 民防衛, 消防業務를 管掌하게 되고, 地方職副市長은 産業經濟, 交通, 都市計劃, 住宅, 道路, 上.下 水道業務에 관한 業務를 管掌하게 됩니다.

○權寧斌 委員;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政務職이라는 概念은 市長도 그럼 政務職 市長입니까?

○內務局長 金東勳;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民選 市

長.....

○權寧斌 委員; 長官級, 次官級 그 얘기입니까?

○內務局長 金東勳; 지금 政務職이라고 하는 概念이 國家公務員法上 지금 地方政務職은 서울市가 최초로 하나 생기는 결과로 됩니다, 이번에. 政務職은 國家公務員法上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次官級 이상을.....

○權寧斌 委員; 次官級 이상?

○內務局長 金東勳; 네.

○權寧斌 委員; 그럼 地方職 副市長은 次官級이 아닙니까?

○內務局長 金東勳; 次官級입니다, 政務職이기 때문에.

○權寧斌 委員; 아니 副市長이 둘이니까 이 地方職 副市長은 뭐가 되느냐 이것이지요?

○內務局長 金東勳; 次官級입니다.

○權寧斌 委員; 그 분도 똑같은 次官級 아니에요?

○內務局長 金東勳; 네, 똑같습니다.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는 大統領이 任命하고 國費의 俸給을 타고, 地方職 政務職일 경우에는 市長이 任命하고 서울特別市豫算에서 俸給이 나갑니다.

○權寧斌 委員; 豫算요? 政務職은 國家에서 나오고.....

○內務局長 金東勳; 네. 國家政務職은 國家豫算에서 俸給이 나가고 地方政務職은 서울特別市 豫算에서 俸給이 나가고.

○委員長 朴禧柱; 더 質疑 없습니까?

金鍾雄 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金鍾雄 委員; 이 資格基準에서 第2條第3項에 其他 地方行政分野에 學識과 經綸을 가진 者라고 해서 길을 넓혀 놓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게 함축성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行政公務員 經歷이 전혀 없더라도 學識과 經綸 그랬을

때 一例를 들어서 이름 있는 大學이든 없는 大學이든 大學에서 地方行政을 講義를 했다든지 뒤 冊을 한 두권 썼다고 했을 때 그런 사람도 하나의 經歷者로 봐 주느냐, 그런 問題는 어떻게 됩니까?

○內務局長 金東勳; 볼 수가 있지요.

○金鍾雄 委員; 이것은 任命權者의 뜻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런 사람도 登用시킬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內務局長 金東勳; 물론입니다. 지금 地方政務職은 현재까지 없었기 때문에 政務職은 다 國家公務員이었습니다. 그래서 國家公務員法上 政務職에 관해서 任用 資格基準을 정해 놓은 先例는 없습니다. 그것은 任命權者가 자기가 그 능력을 인정하면 아무나 任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地方政務職의 경우에 地方自治法에서 資格基準을 當該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해라 해 냈기 때문에 그 立法精神을 생각해 보건데 너무 任命權者 裁量權 範圍를 소위 일탈했다고 하는 그런 人事의 專橫이 나올까봐 그런 立法을 自治法에서 그런 規定을 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條例案을 정하는데 이러한 1號, 2號는 상당한 經歷을, 지금까지 서울시 副市長의 경우에 이러한 經歷의 所持者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러한 條項을 넣었고, 그리고 3號를 넣은 것은 任命權者인 市長의 裁量權을, 任命上의 裁量權을 너무 1號, 2號만 가지면 억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유능한 人材를 광범위하게 選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號를 넣었습니다.

○金鍾雄 委員; 內務部案에서 이미 아마 확정되어 온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地方自治發展을 위해서라면 副市長 정도를 登用할 때는 최소한 議會의 同意를 받는 정도까지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3號項을, 이것을 自由自在로 활용

한다고 그러면 市長으로서 얼마든지 자기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데려다, 앞으론 특히 民選인데 자기 基盤構築 내지는 또 세 번까지 連任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살릴 수 있는 條項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전혀 지금 현재 우리 議會가 있어 봐야 執行部에 대한 牽制. 다시 말해서 自動車같은 브레이크 장치는 하나도 없는 것이 지금 地方自治法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이런 또 毒素條項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좀 개운치 않습니다.

○內務局長 金東勳; 國家公務員의 경우에 이제 國會의 同意를 받는 公務員을 극히 制限시켜놨습니다. 그것은 任用權者의 任用權을 너무 制限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司法的인 그런 業務를 處理하는 分野, 이런 경우에 한해서 立法部인 國會의 同意를 받는 것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副市長의 任用に 議會의 同意를 前提로 한다고 하는 것은 現行的 地方自治法 자체를 改正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朴禧柱; 알겠습니다. 충분한 의견을 開陳한 줄…….

(「아니 아니……」 하는 委員 있음)

또 있습니까?

(「네」 하는 委員 있음)

○權寧斌 委員; 말씀을 하나 한 번 좀 드리고 싶은 것은 國家職副市長이 맡는 業務가 주로 그 行政 分野 같고 또 地方職副市長이 맡는 分野가 좀 技術分野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아예 國家職副市長이다 이런 名稱보다는 行政職副市長 뒤 技術職副市長 이렇게 해서 行政과 技術이 조화가 돼서 市政을 責任지는 이런 것은 어떤가 한 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있는가…….

○內務局長 金東勳; 여기서 말이죠, 國家職副市長, 地方職副市長은 副市長의 名稱이 아닙니다. 이것은 任命權者가 누구냐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國家職副市長, 地方職副市長 이렇게 해 놨습니다.

○權寧斌 委員; 그렇습니까?

○內務局長 金東勳; 네.

그러니까 이 名稱은 말이죠, 서울特別市에 이제 두 사람의 政務職副市長을 두는데 한 사람은 國家에서 俸給이 나가는 사람이고 大統領이 또 任命權者이고, 한 사람은 市豫算으로 해서 俸給이 나가고 市長이 任命權者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權寧斌 委員; 그러니까 副市長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大統領이 任命을 하고 한 사람은 市長이 직접 任命을 하는데, 그럼 業務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內務局長 金東勳; 그런데 이제 國家公務員인 副市長은 바로 企劃管理, 監査, 內務 이런 業務를 管掌하고요, 地方公務員인 副市長은 産業經濟, 交通, 都市計劃 業務 같은 것을 管掌하게 된다, 名稱은 말이죠, 名稱은 第1副市長, 第2副市長이 되는 것입니다.

○權寧斌 委員; 아니 이제 그것은 좋은데요, 그럼 任命權者가 누구냐에 따라서 副市長이 자기 任命權者를 바라보고 일을 할 경우에 만일 市長과 大統領의 뜻이 달랐다, 다를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自治團體 이것이 잘 되겠습니까? 假定을 했을 경우에 市長이 뭐 꿈이 있고 좀 뭔가 유능한 분이 오셨는데 大統領 말을 잘 안 들었다 그러면 靑瓦臺에서 任命한 사람은 大統領 말을 따르려고 할 것이고 또 民選市長은 자기 所信대로 할 것이고 충돌이 없을까

요?

○內務局長 金東勳; 그것은 政治的인 事項인데요, 地方自治 體制下에서는 도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大統領은 A黨 出身인데 市長은 B黨 出身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政治的인 마찰 관계는 도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國家公務員인 副市長도 大統領이 任命權을, 물론 任命權이야 大統領의 뜻에 따라 되는 것이지만 法律上 任用提請權은 市長한테 있습니다. 市長이 提請해서 大統領이 任命하는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權寧斌 委員; 완전히 大統領 사람이 아니고 市長이 그래도 추천할 수 있는 것이군요.

○內務局長 金東勳; 네.

○委員長 朴禧柱; 다음 李永和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李永和 委員; 이게 무슨 準則이 내려 온 것이 있나요, 內務部에서?

○內務局長 金東勳; 이것은 없습니다.

○李永和 委員; 없지요?

○內務局長 金東勳; 네.

○李永和 委員; 없으면 좋고. 이것이 아까도 金鍾雄 委員도 말씀을 했지만 이 第3項, 任用要件 第3項이 第1.2項을 죽이는 것이거든요, 이게. 소용없이 만들어 놓는 거란 말이야, 第3項 때문에. 當選된 民選市長이 現職 公務員은 排除하고 자기 멋대로 任命할 수 있는 사람이 第3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內務局長 金東勳; 네.

○李永和 委員; 그렇죠?

○內務局長 金東勳; 네.

○李永和 委員; 그러니 이 第3項이 필요한가요?

○內務局長 金東勳;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앞에 第1.2號하고 第3號는 서로 牽制하는 役割을 하게 되겠는데 第1.2號 때문에 第3號를, 그 市長이 第3號를 완전히 專橫事項으로 자기가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第3號 때문에 第1.2號를 마음대로 專橫을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規程을 넣어 놨습니다. 그렇다고.....

○李永和 委員; 되도록 第3號를 적용하려 할거예요. 자기 사람 쓴다고 할거란 말이에요.

○內務局長 金東勳; 그러나 앞에 第1.2號가 있기 때문에.....

○李永和 委員; 現職 公務員 제쳐놓고 자기 사람 쓰려고 하는 길을 열어주는 결과가 된다 이거예요, 이게.

○內務局長 金東勳; 앞으로 第1.2호가 있기 때문에 第3號를 採用해서 選拔할 경우에도 第1.2號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基準에 합당한 第3號를 고를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選出職, 選舉職 市長한테 市長의 任用權을 지금 國家政務職인 경우에는 任用資格基準이 아예 없는데 選舉에 當選된 市長의 任用權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制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李永和 委員; 이런 것을 넣으려면 너무 막연하니까 아주 뭐 갖대기를 한 더 넣어요. 行政經驗이 5年間 있고 學識과 經驗이 있는者, 이래서 당신들 스스로를 保護해야지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나 몰라라 이런 상태인데 이것 안 돼요.

(「民選市長 할 필요없죠」 하는 委員 있음)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參考로 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地方職이 많이 생길 거란 말이야, 地方自治團體가 되면. 그럼

여기 1級 이상의 公務員, 여기 1級이라는 것은 國家職 말하는 것이지요.

○內務局長 金東勳; 아닙니다.

○李永和 委員; 地方, 國家 다 합해서.

○內務局長 金東勳; 國家, 地方 다 합해서 입니다.

○李永和 委員; 표시 안해도 돼요.

○內務局長 金東勳; 네.

○李永和 委員; 그것은 國家, 地方 뭐 표시 안해도 돼요.

○內務局長 金東勳; 네.

○李永和 委員; 그냥 1級.....

○內務局長 金東勳; 1級 이상 地方, 國家 다 포함된 것이니까요.

○李永和 委員; 國家나 地方이나 같아요.

○內務局長 金東勳; 네, 같습니다.

○權寧斌 委員; 전 李永和 委員님의 말씀에 反對를 하거든요. 民選市長할 적에는 포부가 있고 자기 經綸을 펴려고 그러는데 밑에 자기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公務員만 갖다 놓으면 公務員의 長點도 살려야 되지만 民間人의 長點도 살려야 되지 않나.....

○李永和 委員; 아니 가만 있어, 그것은 내가 保留하고, 1級 이상의 公務員, 2級 이상의 公務員 이것은 지금 다르잖아요 엄연히. 예를 들어 地方의 副市長들 있잖아요, 地方의 副市長들은 國家 書記官級이란 말이야, 地方副理事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俸給은 그 俸給을 받지만 格으로 따지면 行政國家 書記官하고 같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지금 待遇를 받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적으로 國家, 地方 합해서 1級 이상 이렇게 해 놓으면 地方을 상당

히 높여주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알아두라 이거예요.

○內務局長 金東勳; 서울시는 지금까지 國家, 地方公務員 차 별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다 國家公務員 1級 이상의 公務員 이렇게, 國家公務員 2級 이상의 公務員 이렇게 둘 수 가 없습니다.

○李永和 委員; 괜찮겠어요?

○內務局長 金東勳; 네.

○李永和 委員; 하여튼 그래요. 市長에 當選된 사람이 자기 사람 하나 마음대로 못 쓰느냐 이런 얘기가 된다면 이 第3條 가 필요하지만 第3條가 있기 때문에 第1.2條文은 완전히 죽 어버리는 거예요.

○委員長 朴禧柱; 委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第2項 서울特別市副市長資格基準에 관한條例案은 委員 여러 분의 異議가 없으신가 묻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서울特別市副市長資格基準에 관한條例案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參 照)

서울특별시부시장자격기준에 관한조례안

(뒤에 실음)

.....

○委員長 朴禧柱; 그러면 잠시 議案番號 1185番, 權寧斌 委員과 金鍾雄 委員, 白中元 委員, 沈相一 委員, 韓仁洙 委員 또 李永和 委員의 여러 가지 意見이 있어서 잠시 停會를 宣 布하겠습니다.

10分間 停會하겠습니다. 意見調整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15時 16分 會議中止)

(15時 32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禧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續開를 宣言합니다.

(議事棒 3打)

議案番號 1185番에 대하여 議決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特別市紛爭調整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案에 대하여 執行部の 다음과 같이 修正案이 提出되었습니다. 修正案 內容은 條例案 第3條 中 第3項第1號의 公務員의 6人을 5人으로 하고, 同項 第2號의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 中에서 7人을 8人으로 하며, 條例案 第5條 中 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합니다.

第3項, 當該 紛爭事項과 利害關係가 있는 民間人 委員은 當該 事項의 審議에서 除斥한다라고 修正한 것입니다.

委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서울特別市紛爭調整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案은 修正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뒤에 실음)

.....

○委員長 朴禧柱; 委員 여러분 그리고 內務局關係公務員 여러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週 月曜日 11月 28日 10時에 民防衛局 所管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議事日程은 모두 마치고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5時 34分 散會)

---

○出席委員

朴禧柱 郭壽榮 韓仁洙 朴光勳  
白中元 李永和 權寧斌 姜晶錫  
許洹 金鍾雄 沈相一 文一權

○專門委員

鄭文孝

○出席公務員

內務局長 金東勳